

[2019년 4월] EU 수출현안 □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EU 농산물 수출 증가

- 출처 : 유럽위원회(2019.04)

(https://ec.europa.eu/info/sites/info/files/food_farming_fisheries_trade_documents/monitoring_agri-food_trade_jar_2019_en.pdf)

- (수출입) 유럽위원회는 지난 4월 월간(2019년도 1월) 무역보고서를 발표함
-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, 2019년 1월 농산물 수출액은 112억 유로를 달성함.
동기간 수출액은 108억 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농산물 수출입은 약 22억 유로의 흑자를 나타냄
- (수출) 보고서에 따르면, 전년도 동기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교역 대상국으로는 ① 미국(1억 9,100만유로), ② 중국(9,100만 유로), ③ 스위스(3,900천만 유로) 등이 있으며, 수출 감소 대상국으로는 ① 홍콩(4,400만유로), ② 터키(2,900만유로), ③ 앙골라(2,600만 유로) 등이 있음
- 가격기준,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한 식품군으로는 증류주(8,100만 유로), 와인(6,800만 유로), 분유(5,800만 유로)로 집계된 반면, 수출 감소를 나타낸 식품군으로는 설탕(5,300만 유로), 담배(2,900만 유로)로 조사됨
- (수입) 한편, `19년도 1월 기준, 전년도 동기대비 對 유럽연합 농산품의 수입이 가장 활발하게 증가한 국가로는 ① 미국(2억 9,100백만 유로), ② 우크라이나(2억 4,600백만 유로)가 있으며, 수입 감소 국가로는 ① 브라질(1억 4,500백만 유로), ② 인도네시아(9,700만 유로) 등이 있음
- 밀가루와 쌀을 제외한 곡물류(1억 7,000만 유로), 깻묵(1억 3,400백만 유로)의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, 팜유(1억 6,500만 유로)의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함
- (`18년도 2월 ~ `19년도 1월 수출입 통계) 유럽연합은 지난 1년간의 농산물 수출입 기록을 통해,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미국(22.4%), 중국(11.2%), 스위스(8.3%)를, 수출품목으로 증류주(6% ↑), 와인(3% ↑), 파스타

(6% ↑)로 분석함

- 반면, 유럽연합의 주요 농산물 수입대상국으로는 미국(14% ↑), 러시아(29% ↑), 우크라이나(6% ↑)로 나타남
- 인기 수입 품목으로 통 알곡(31% ↑), 감귤류나 열대과일을 제외한 과일(9% ↑), 껌(7% ↑), 두유(6% ↑) 등으로 조사됨

- 유럽연합 수출입 대상국 및 식품군별 상세 수출입비중은 상기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

2. 규정 (EU) 2019/651 발표 : ‘ 아동성장발달 기여’ 로 언급되는 ‘ 건강식품확인’ 허가요청 거부

- 출처:EUR-Lex(2019.04.24)

(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PDF/?uri=CELEX:32019R0651&qid=1554202683512&from=EN>)

- 해당 규정은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2006년 12월 20일, 식품영양과 건강식품 확인과 관련하여 제정한 규정 (EC) No 1924/2006, 특히 제 17조 3항에 관련한 규정임
- 규정 (EC) No 1924/2006에 따르면, 건강식품확인의 요청은 위원회에 의하여 기존에 허가 된 내용과 맥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부될 수 있음
- 규정 (EC) No 1924/2006에 따르면, 건강식품확인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서는 식품사업체로부터 EU회원국의 관련당국으로 어느 국가로든 제출 가능하며, 각국의 관련당국은 수령한 신청서를 유럽식품안전청(EFSA,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)으로 송출함
- 유럽식품안전청은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과 유럽위원회에 전달해야 함
- 건강식품확인과 관련한 위원회의 규정 재정 및 개정 여부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제공한 심사결과에 크게 기준하여 결정됨

- 식품가공업체 Heinz의 공급체인 업체 Europe B.V,는 규정 (EC) No 1924/2004 제 14조 1-b항에 근거하여, 유산균 파라카세이와 함께 발효시킨 탈지유 ‘Nutrimune’ 관한 건강식품확인 신청서를 제출함
 - 해당 업체가 원하는 구체적 건강식품확인 문구는 ‘ 해당물질이 아동의 위장과 기도에서 서식하는 병원균에 대항하여 면역력 증진에 기여함이 증명되었다’ 는 내용이었음
- 유럽식품안전청은 해당물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Nutrimune의 소비가 내장과 기도에 생식하는 병원균에 맞서 면역하는 상관관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¹⁾을 도출하고, 이를 유럽위원회와 회원국에게 전달함
- 유럽위원회는 규정 권력기관의 연구결과 및 (EC) No 1924/2006의 16조 6항에 따라, 해당 물질의 건강식품확인서 허가 신청을 최종 거부하고 아래의 세부 규정을 재정함

- 아래 -

제 1 조

- Nutrimune과 관련한 건강식품확인 내용을 규정의 부속서에 포함함
- Nutrimune의 건강식품확인 요청은 규정 (EC) No 1924/2006 제 14항 1조에 따라 최종 거부됨

제 2 조

-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관보 공표일²⁾ 20일 후부터 효력을 가짐

※ 부속서(건강식품확인요청 거부건)

관련규정 및 내용	영양, 물질, 식품 카테고리	요청내용	유럽식품안전청 심사 문건번호
(EC) No 1924/2006 제 14조 1-b항. 아동성장과 관련한 건강식품확인	Nutrimune (파라카세이 유산균과 함께 발효된 탈지유)	Nutrimune이 아동의 내장과 기도에 생식하는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 강화에 기여함	Q-2016-00008

- (시사점) 한편, EU 회원국으로 관련한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수출중이거나

1) 문서명 : Question No EFSA-Q-2016-00008

2) 공표일 : 2019.04.24

수출을 계획하는 업체는 해당 물질 외, 건강식품범주로 확인된 일련의 물질 리스트를 관련한 규정 (EC) No 1924/2006³⁾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3. 규정 (EU) 2019/649 발표 :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트랜스 지방⁴⁾의 섭취와 관련하여 재정한 규정 (EC) No 1925/2006의 부속서 III의 개정

- 출처:EUR-Lex(2019.04.25)

(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qid=1554202683512&uri=CELEX:32019R0649#ntr4-L_2019110EN.01001701-E0004)

- 해당 규정은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2006년 12월 20일, 트랜스지방의 섭취와 관련하여 재정한 규정 (EC) No 1925/2006, 특히 비타민, 미네랄 및 기타물질과 관련하여 기록된 제 8조 2항과 관련한 규정임
- 규정 (EC) No 1925/2006 8조 1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비타민, 미네랄 외에 기타 물질을 부속서 III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
 - 부속서 III은 유럽연합의 감독 아래, 소비자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물질의 리스트임
- 2009년 12월 4일 유럽식품안전청(EFSA,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)은 ‘ 트랜스지방산의 섭취가 낮으면 낮을수록 영양학적으로 인체에 유익하다’ 는 연구결과⁵⁾를 채택함
- 유럽식품안전청은 또한 2009년 12월 5일, ‘ 유럽연합 회원국민의 트랜스 지방섭취 동향 보고서⁶⁾’ 를 채택함.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, 트랜스지방 식품의 과도섭취가 EU 내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남
 - 해당 보고서는 ‘ 트랜스지방 식품에 대한 법적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공중보건, 소비자 보호 및 내부시장과의 호환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’ 고 주장함

3) 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PDF/?uri=CELEX:02006R1924-20121129&from=EN>

4) 동물성 지방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섭취되는 트랜스지방은 제외함

5) EFSA Journal 2010; 8(3):1461.

6) COM(2015)619 final of 3.12.2015.

- 2018년 4월 30일, 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에 트랜스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, 특히 식품과 식품 첨가물 섭취 시 식이표준치 등이 포함된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위한 권고사항 제출을 요청함
- 2018년 6월 19일, 유럽식품안전청은 기존 채택된 보고서 외에 최근의 연구, 국제적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‘ 트랜스지방산의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’ 는 결론을 전달함
- 2018년 5월 15일 세계보건기구(WHO, World Health Organization)는 식품 산업에서 대량생산· 공급되는 트랜스지방산의 생산중단을 호소한 바 있음
- 트랜스지방은 현재의 과학기술 연구결과에 따르면, 비타민, 미네랄과 달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. 그렇기에 해당 물질은 규정 (EC) No 1925/2006 부속서 III-B에 언급되어야 하며, 해당물질의 제조는 부속서에 명시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가 되어야 함
-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정의하는 ‘ 지방’ 과 ‘ 트랜스지방’ 의 차이는 규정 (EC) No 1925/2006의 부속서 I에 정리되어 있으며, 부속서 III-B에 언급된 ‘ 소매 (retail)’ 의 정의는 규정 (EC) No 178/2002 제 3장 7항을 따름
- 규정 (EC) 2019/649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여, 관련당국은 소매업체를 제외한 식품산업 종사자이 취급하는 트랜스지방의 양이 지방 100g당 2g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함
- 식품종사자들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새로운 요구를 실행하도록 적절한 과도기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
- 또한, 규정 (EC) No 1925/2006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, 수정되어야 함
- 상기된 일련의 신규규정 재정은 식물, 동물, 식품과 사료 상임위원회 (The Standing Committee on Plants, Animals, Food and Feed)의 견해와 일치함
- 유럽의회와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아래의 세부내용을 규정 (EC) No

- 아래 -

제 1 조

- 소비자의 섭취를 최종목표로 소매업체로 납품되는 인공 트랜스지방의 공급은 지방 100g 당 2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
제 2 조

- 식품업체가 소비자의 섭취나 소매업체 납품을 최종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식품업체로 인공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, 트랜스지방의 함량은 지방 100g당 2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
제 3 조

- 규정 (EC) No 1925/2006 부속서 III-B의 내용은 해당 규정의 부속서 내용으로 개정됨

제 4 조

-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관보 공표일⁷⁾ 20일 후부터 효력을 가짐. 해당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식품의 시장 유통은 2021년도 4월 1일까지 유효함

※ 부속서(규정 (EC) No 1925/2006 부속서 III-B에 아래의 표가 추가됨)

제한 물질	사용 환경	기타 요구사항
인공 트랜스지방	최대 2g/100g (트랜스지방/지방)	식품업체가 소비자의 섭취나 소매업체 납품을 최종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식품업체로 인공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, 트랜스지방의 함량은 지방 100g당 2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
- (시사점) 한편, EU 회원국으로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을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업체는 해당 규정의 세부내용 및 발효일정을 참고바람

7) 2019.04.24.

II**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**

- 없음

III**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**

- 없음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9.01.01						

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